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따스한재가복지센터

1. 계약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다만,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등외자는 3개월 계약을 기본 값으로 하여 계약한다.
(단, 등급신청이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)

2. 계약목적

- 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- ②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보호자와 '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'을 체결한다.

3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① 인원인수인의 권리
 - 1)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,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- 2)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 요청
 - 3)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의 요구
 - 4)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
 - 5)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-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 - 1) 이용자의 건강 관련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
 - 2)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의 의무
 - 3) 인적사항 등의 변동사항 통보의 의무
 - 4)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에 간호,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

4. 계약의 해지

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,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이용자의 사망
-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
- ③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
- ④ 기관 내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

- ⑤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- ⑥ 기타의 사유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
- ⑦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5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『노인장기요양보험법』 제40조에 따라 부담한다. (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부담금을 수납하며,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)
- ② 급여비용은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의 제31조를 따른다.
- ③ 비급여비용은 시설장(원장)이 정한다. - <별표1 참조> (식대는 1식 기준 2,000원/간식은 하루 기준 500원/ 그외는 실비처리)
- ④ 이용료는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라 산정한다.
- ⑤ 등급 외 이용자 <23년 3분기 개정>
 - 1) 식대/간식비를 미포함하여 1일 15,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.
 - 2) 위 항의 금액은 3개월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못한다. 단, 등급신청이 진행중이며, 1개월 이내로 등급이 발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3) ②항목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도록 한다.
 - 4) 주말, 공휴일은 식대/간식비를 미포함하여 1일 20,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.
 - 5) 일요일은 식대/간식비를 미포함하여 1일 35,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. (단, 6시간 미만 이용의 경우는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를 따른다)

5-1. 급여한도액 초과분 <23년 9월부터 적용>

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급여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할 경우

- ① 급여한도액이 초과된 당일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% 본인부담을 하도록 한다. (ex. 5등급 8시간 급여 이용중인 수급자가 급여 잔액이 30,000원이 남은 상황에서 급여를 이용할 경우, 52,050-30,000 = 22,050원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)
- ② ①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15조의 4-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